

2021년 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라북도 내 우수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지원을 통해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『창업기업 전자상거래 판로지원 사업』 진행하고 참가를 원하는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4월 2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I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- 전라북도 내 창업기업의 우수제품 전자상거래 판로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우수기업 육성

□ 주요내용

- 모집대상 : 도내 7년 이내 온라인 유통사 입점(예정) 기업
- 선정규모 : 총 10개사 내외
 -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
 - 전자상거래* 입점비용(판매수수료 및 입점기획, 프로모션 등)
: 최대 금8백만원 지원(기업 자부담 20% 포함, 기업부담금 160만원)
※ 카카오메이커스, 롯데온 등 입점 지원 예정
 - 마케팅 교육, 제품 품평회, 제품기획 컨설팅 등 입점에 필요한 과정 지원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'21. 11. 30 까지

II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-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이며, 업력 7년 이내('14. 4. 2. ~ '21. 4. 2.)
 - *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사업자(개인·법인)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, '창업인정 기준'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

* 창업일 : 개인 - 사업자등록증의 '개업연월일' / 법인 - 법인등기부등본의 '회사성립연월일'

☞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
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 제출(최종선정자에 한함)

□ 창업인정 기준

※ 동종 및 이종업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

○ '창업'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신청하는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☞ 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
* 폐업 기업 포함

☞ 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지 않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
☞ 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(사업승계 제외)

○ '창업'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- ☞ 기존 기업* (개인, 법인)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※ 조직변경, 형태변경, 위장창업에 해당
* 폐업 기업 포함
- ☞ 기존 기업 (개인, 법인)을 폐업하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※ 법인전환, 사업승계에 해당
- 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※ 사업이전(재창업)에 해당
- ☞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※ 사업확장, 업종추가에 해당

□ 신청제외대상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- 기 선정되어 협약 후 사업을 수행한 자(기업)
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- 타 기관,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('21.4.16.) 이후인 경우
-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(개인, 법인)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4조 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(기업)
※ [참고 1]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III 지원내용

□ 지원내용

- 전자상거래 입점비용(판매수수료 및 입점기획, 프로모션 등)
최대 금800만원지원(기업 자부담 20% 포함)
※ 카카오메이커스, 롯데온 등 입점지원 예정
- 마케팅 교육, 제품 품평회, 제품기획 컨설팅 등 입점에 필요한 과정 지원
- 사업비 구성 : 창업기업 자부담금 배정 사업비의 20% 이상

<사업비 구성 예시>

총사업비	지원금	창업기업 자부담금
		현금
800만원 100%	640만원 80%	160만원 20%
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'21. 11. 30까지

IV 신청 및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1. 4. 2.(금) ~ 4. 16.(금) 18:00 까지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 <http://event.jbci.or.kr>

(문의 성장육성본부 ok@ccei.kr / 063-220-8924)

※ 신청양식 : 온라인 신청 플랫폼 - 사업신청 공지사항 다운로드

http://event.jbci.or.kr/sub/sl_1.html

□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(필수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(필수)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(필수)
- 대표자 신분증 사본(필수)
- 사실증명(홈택스 발급가능)(필수)
 - 기창업자 :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폐업증명원(폐업사실이 있을 경우)

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/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** 기창업자 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/ 예비창업자 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

○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(기업성과 작성자)

매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, 국제인증서, 국제협약서 등
투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
고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
○ 기타 제출서류(아이템 관련 증빙 서류)(해당자)

V 선정 절차

□ 추진일정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- 교육프로그램 : 전자상거래(e-커머스) 입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
- 제품품평회 : 기업 제품을 유통 MD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품평회
- 제품기획/컨설팅 : 판매 및 입점을 위한 디자인, 제품 컨설팅
- 입점지원 : 입점 후 판매수수료 및 입점비 지원
(카카오메이커스, 롯데온 등 지원 예정)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발표평가는 (예비)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【참고 1】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 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